

충청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
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충청북도의회
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23년 3월 7일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3월 9일

3. 제안이유

미래 성장동력인 이차전지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, 충청북도 이차전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

4. 주요내용

가. 이차전지산업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(안 제4조)

나. 이차전지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·구성 및 운영(안 제5조 ~ 안 제10조)

다. 이차전지산업 육성사업의 추진 및 위탁 근거(안 제11조)

라. 이차전지산업 육성사업 수행기관 등에 대한 비용 지원(안 제12조)

마. 육성사업의 수탁자 등에 대한 지도·점검(안 제13조)

바. 이차전지산업 육성에 이바지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(안 제14조)

5. 검토의견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복순)

가. 제출배경

- 이 조례안은 미래 신성장동력으로써 충청북도 이차전지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통해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이차전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
- 이차전지산업은 충청북도의 대표적 주력산업으로 이미 이차전지 고도화 지원사업, 이차전지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구축사업 등 관련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
- 충북 이차전지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더욱 육성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

나. 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

- 이 조례안은 본칙 14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
-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이차전지산업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
- 안 제4조는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·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육성계획을,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
- 안 제6조는 이차전지산업육성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을 과학인재국장으로, 부위원장을 담당과장으로 규정하였고, 이는 관 주도로 위원회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보여지나, 이차전지산업의 특성상 민간

의 기술력과 경험 등 민간 전문가 등의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되는 현실에서 민간주도가 아닌 관 주도의 위원회 운영은 획일화되고, 경직된 운영 등이 우려됨에 따라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며, 관련 부서의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

- 안 제7조는 ‘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’에 관한 사항으로,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9조제1항과 비교할 때, 안 제7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제척 등의 사유를 제3호에서 위원이 해당 안전에 관한 증언, 감정 외에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을 삭제하여 제척·기피·회피 조건을 완화하였는데, 그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
-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이차전지산업 육성사업의 추진, 수행기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

다. 종합의견

- 이차전지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, 이를 통해 이차전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, 조례안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
- 다만, 관 주도의 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 앞서 지적한 사항들에 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, 이에 대한 관련 부서의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